

특용작물(인삼)생산시설현대화 사업

I 사업 개요

□ 목 적

-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,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

□ 사업내용

-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, 무인방제시설, 점적 관수시설, 방풍망 시설, 야생동물방지시설, 도난방지시설, 이식기, 파종기, 수확기, 비료살포기, 지주설치기 등 지원

□ 지원 자격 및 요건

- 2025년도에 직파했거나 2026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(하려는) 농업경영체
- 무인방제시설, 방풍망시설, 야생동물방지시설, 도난방지시설, 이식기, 파종기 및 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
- GAP(친환경 포함) 인증 또는 GAP(친환경 포함)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(GAP,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)

□ 지원내용 및 예산

- **지원 내용**
 - **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** : 개소당 2ha이내(60백만원/ha)
 - **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** : 개소당 1ha이내(220백만원/ha)
 - **무인방제시설** : 개소당 2ha이내(15백만원/ha)

- **인삼 점적관수시설** : 개소당 2ha이내(8백만원/ha)
- **인삼 이식기·파종기·수확기, 인삼발 쟁기, 두둑형성기, 비료살포기, 향타기** : 대당 5백만원 이내

- 지원 기준 : 국고 20%, 지방비 30%, 자부담 50%

□ 사업 신청

-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읍·면에 제출
 - * 사업신청서 제출 시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또는 인삼경작확인서(또는 인삼경작신고서)를 제출
 - * 인삼경작확인서(또는 인삼경작신고서)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추후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를 추가 제출

□ 대상자 선정

- 읍·면에서 사업계획을 심의 후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
 - 인삼은 품목 특성상 이동경작, 원거리 경작이 많으므로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대상자 **인삼재배지의 지자체**에서 대상자를 선정

Ⅱ 주요 내용

1. 사업대상자

-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(이하 농업경영체)
 - 농업인 :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
 - 농업법인 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
 - 생산자단체 :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 제3조제4호

[지원제외 대상자]

-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
- 인삼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거나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
- 「인삼산업법」에 따른 경작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2025년도에 직파했거나 2026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(하려는) 농업경영체
 - GAP(친환경 포함) 인증(GAP 인증 신청농가 포함),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업경영체 우선 선정
 -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경영체 또는 신규 인삼재배 농업경영체만 선정
 - *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는 인삼농협 또는 의무자조금단체에 확인
 - * 신규 인삼재배 농업경영체는 사업완료시까지 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서 제출
- 무인방제시설, 방풍망시설, 야생동물방지시설, 도난방지시설, 이식기, 파종기 및 수확기, 비료살포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
 - * 상기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식재년도에 자조금을 납부한 농가만 지원
- GAP(친환경 포함) 인증 또는 GAP(친환경 포함)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(GAP,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)
 - GAP,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의 90% 지원

3. 지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

- 지원대상 :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, 무인방제 시설, 점적관수시설, 방풍망시설, 야생동물방지시설, 도난방지시설, 이식기, 파종기, 수확기, 인삼발 쟁기, 두둑형성기, 퇴비살포기, 비료살포기, 지주설치기
 - * 열거된 항목 이외는 지원 불가
-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재배시설은 「원예·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」 고시 설계도·시방서에 따라 설치(농림축산식품부 고시 : 제2022-104호, 2022.9.30)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 다만,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기상이변을 감안하여 지자체장의 책임 하에 지역실정에 맞게 기준을 변경 적용 가능(기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)
-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**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품질보증**을 받은 제품(**미보증 제품 지원 불가**)
-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설치시 철재지주 구입 및 현물 확인 등 증빙자료를 근거로 사업비 집행이 가능함. 다만, 지원받은 경영체가 사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포기할 경우 시·군에서 사업비 환수 조치
- 사용용도 : 고품질 인삼 생산에 필요한 시설·장비의 설치 및 구입 자금

4.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

- 재원 :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(FTA기금),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, 금융기관 자금(이차보전)
- 지원비율 : 국고보조 20%, 지방비 30%, 자부담 50%

5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**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** : 개소당 2ha이내(60백만원/ha)
- **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** : 개소당 1ha이내(220백만원/ha)
- **무인방제시설** : 개소당 2ha이내(15백만원/ha)
- **인삼 점적관수시설** : 개소당 2ha이내(8백만원/ha)
 - 관정 관련 사업비는 최대 150만원 이내로 지원
- **방풍망시설** : 개소당 2ha이내(6백만원/ha)
- **야생동물방지시설** : 개소당 2ha이내(5백만원/ha)
- **도난방지시설** : 개소당 2ha이내(10백만원/ha)
- **이식기·파종기·수확기, 인삼밭 쟁기, 두둑형성기, 비료살포기, 지주설치기** : 대당 5백만원 이내
(5백만원 초과 기계 구입시라도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)
 - * 지원단가를 초과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및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
 - * 다만,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2개 업체 이상의 사업비 산출근거(견적서, 원가계산서) 등 구비
 - * GAP(친환경 포함) 미인증 농가는 지원한도액의 90%만 지원

6. 유의사항

-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79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 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(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및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)
- 사업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·군을 달리할

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·군에 신청

(※ 단,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와 지원 가능성 여부 사전 확인)

* (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의 경우) 사업장(농지, 시설 등) 소재지 지자체나 시행기관은 사업희망자가 관할 지자체 내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은 이유로 신청이나 선정 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.

- 사업비 집행·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, 사업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
- 본 시행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목적, 지역실정 등을 감안, 지자체장이 검토·결정하여 시행

Ⅲ 사업 신청 및 선정

1. 사업신청단계

농림축산식품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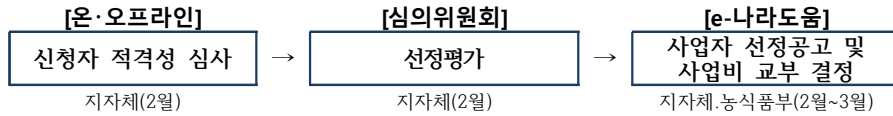
- 시·도별 사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예산 가내시 통보
- 지원조건, 지원자금의 사용·용도, 사업신청 절차·방법, 세부계획 수립·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·도에 시달
- 시·도별 사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예산배정 통보

농업경영체

-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·군에 제출
-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가능금액을 확인
- 농업경영체는 GAP(친환경 포함) 인증서, 인증기관 사후검사결과 등 추진상황 제출
 - * 사업신청서 제출 시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또는 인삼경작확인서(또는 인삼경작신고서)를 제출

* 인삼경작확인서(또는 인삼경작신고서)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추후 의무자금 납부확인서를 추가 제출

2. 사업자 선정 및 배정 단계



지자체

- 시·도지사는 시·도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·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심의 한 후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및 그 명단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
- 인삼은 품목 특성상 이동경작, 원거리 경작이 많으므로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대상자 인삼재배지의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
 - 사업대상자의 자격 요건 확인 등은 지자체간 협조
- 시·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비 배정 결과를 사업대상자에 안내 및 대출취급은행(농협은행)에 융자 실행 요청

농림축산식품부

-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·도가 제출한 신청내용을 감안하여 각 시·도별 지원금액 배정 및 사업비 교부 결정

대출취급은행(농협은행)

-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비 배정(안)에 따라 대출안내 및 실행 준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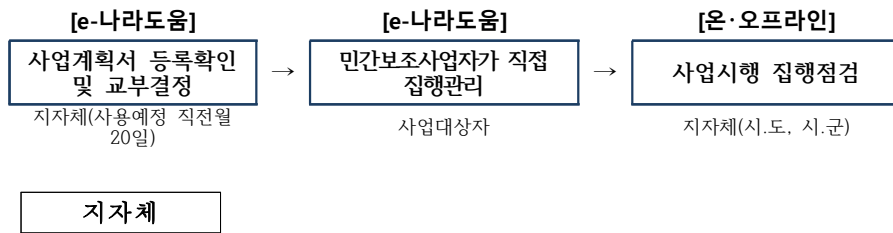
IV 사업 시행 및 관리

1.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

지자체

-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)는 배정된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는 등 시·도(시·군)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시행·추진
 - 시·도 사업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, 보조금 교부신청과 지방비 확보 등 자금집행에 필요한 조치 이행
-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객관적 자료(농협중앙회 계통구매단가, 종합물가정보, 원가계산서 등)에 근거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지를 시장·군수가 검토 후 결정
- 시·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신청자 중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사업대상자로 추가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(사업대상자 변경내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)
 - 추가로 선정할 사업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속히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
-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)는 시공업체를 통해서 시공하여야 하는 세부사업의 경우 농업경영체의 업체선정 편의 제공과 책임시공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시공업체 선정·공기
 - 시공업체는 반드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를 선정
 - 지원을 받은 경영체는 선정·공기된 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택하여 공사 추진
 - 선정된 시공업체는 반드시 직접시공을 하여야 하며, 하청시공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(선정업체 및 하청업체)

2.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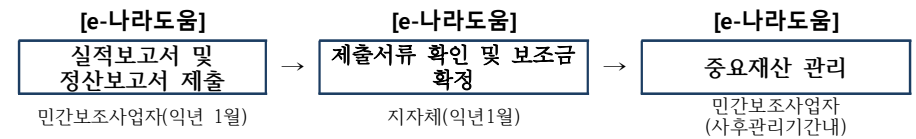


-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)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 「보조금의예산및 관리에관한법률」 등 관련법령과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58조 「사업자금 집행의 원칙」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, 「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」, 「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」 등 절차 이행
 - 경영체에게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식과 사업시행주체(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)를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
-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)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사업비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파악한 후 사용 예정 전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비 배정 요구
-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)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, 지원비율 준수 여부,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여부 확인
-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과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,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, 「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」, 「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」 등에 따라 수행

대출취급기관(농협은행)

-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)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에 적합 여부 확인

3. 이행점검단계



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(시·도)

-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)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
 -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
-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,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
 - 사업실적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 집행, 무단용도 변경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 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
 - 시·군은 예산 이월·불용이 예상될 경우 이월·불용사유서 및 지출원인행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·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즉시 보고
-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)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 업체 선정부터 준공까지 지도·감독 철저

사업비 검정 및 정산(시·도)

-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·군수에게 사업완료 검사 신청
- 시장·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한 후 정산
 - 사업비 집행(인건비, 자재구입 등)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(무통장 입금표, 통장사본, 신용카드 등)로 관련 증빙자료 확인(현금 거래 불가)
- 시장·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·결산하여 결과를 시·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, 시·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1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

4. 사후관리단계

-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)는 특용작물(인삼) 생산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·공급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(사업의 관리책임 등)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 이행
-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·제16조에 의거 관리

재산명	사후관리기간		처분제한 기준
	부터	까지	
- 건물 및 부속설비	준공일	10년간	○ 시장·군수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철저히 관리를 하고,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매각·용도변경·양도·교환·대여·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
- 주요기계 장비·자재	구입일	5년간	

*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69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, 금융기관(농업보조금 취급기관)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

<제재 및 처벌내용>

사업관리주체(시·군, 시·도)

- 시장·군수는 사업대상자가 포기·이월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경우 즉시 시·군에 사업포기서 또는 이월요청서를 제출하도록 조치
- 시장·군수는 해당 사업대상자에 대해 별도 관리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을 제한
 - **(포기)** 포기일 이후 **3년간 해당 사업 지원 제한**
 - **(이월)** 준공일 이후 **2년간 해당 사업 지원 제한**
- * 단, 농식품부로부터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,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해당되지 않음
- 시·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영체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조치 시행
- 보고체계 : 시·군·구 → 시·도 → 농림축산식품부

자금관리주체(대출취급기관)

- 대출취급기관은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61조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 및 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용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, 부당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때에는 농식품부 등 사업자금관리자와 사업관리기관에 통지하고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며, 이차보전금 신청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
특용작물(인삼)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

특용작물(인삼)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 현황(수요조사) 보고

(단위 : m², 톤)

[illegible]

* 순위는 각 시·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순위임

<붙임 3호 서식>

특용작물(인삼) 생산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

□ ○ ○ 도

(단위 : m², 톤)

[illegible]

* 인삼 재배면적은 연근 구분없이 사업 신청전 식재되어 있는 면적임

* 순위는 각 시·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순위임